

1. 제정 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고,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나.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3조)

자율운항선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 중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양수산부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연 락 처	044-200-6201